

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교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67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9. 30.

발의자 : 김교홍 · 강득구 · 박성준

박찬대 · 우원식 · 윤관석

이성만 · 정일영 · 한정애

허종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방사업자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은 직접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특히,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은 국민과 소방사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영세한 소방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확대 · 발전되어야 하나, 소방산업 대표 전문보증기관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공제상품의 기획, 판매,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소방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.

유사 산업 분야를 비교해 보아도 산업별 공제조합 중 일부 공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은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유일함.

이에 공제사업에 대한 일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제조합이 손해 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의 운용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산업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2항 삭제).

법률 제 호

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공제조합의 사업) ① (생 략) <u>②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공 제사업은 공제조합이 직접 수 행할 수 없다.</u>	제24조(공제조합의 사업) ① (현 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